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김영호 · 박수현
이성윤 · 김승원 · 서삼석
김한규 · 이정문 · 이해식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반도체 ·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,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, 예비 · 음모죄,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· 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0조, 제50조의2 신설 등).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전단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20억원”을 “100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년 이하”를 “3년 이상”으로, “20억원”을 “3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5년”을 “20년”으로, “15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, “5억원”을 “1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예비·음모) ①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0조의3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

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0조의4(몰수 및 추징) ①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(이하 이 항에서 “범죄수익”이라 한다)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,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0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벌칙) ① 전략기술을 외국 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<u>5년</u>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<u>20</u> <u>억원</u>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.	제50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년</u> ----- ----- <u>10</u> <u>0억원</u> -----.
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<u>20년</u> 이하의 징역 또 는 <u>20억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 이상</u> ----- <u>30억원</u> -----.
③ 제15조 각 호(제4호 · 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<u>1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15</u> <u>억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년</u> ----- <u>20</u> <u>억원</u> -----.
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5억원</u>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	④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-- <u>10억원</u> ----- -----.

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50조의2(예비·음모) ①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0조의3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0조의4(몰수 및 추정) ① 제50

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에
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
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
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(이하
이 항에서 “범죄수익”이라 한
다)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
산은 몰수하고, 이를 몰수할 수
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
추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
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
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
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
10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
12조를 준용한다.